

## 목포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7월 18일 총무사회위원회
- 나. 상정일자 : 2001년 7월 19일

### 2. 제안설명요지

#### 가. 제안설명

- 총무사회위원회 : 김 대 중 의원

#### 나. 제안이유

- 목포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키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시 시민의 날 행사 일을 달리 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코자 함.

#### 다. 주요내용

- “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.”에 단서조항으로 “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민의 날 행사는 사전 목포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개최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.”로 신설한다.(안 제2조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생 략”

### 4. 위원회 활동

- 제10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(2001. 7. 19)
  -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응답
- 제106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(2001. 7. 24)
  - 안건검토 및 심사의결

### 5. 토론요지

- 목포시시민의날에관한조례 제2조에 목포시민의 날은 10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10월 1일날 행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시민의 날 행사를 상황에 따라서는 10월 1일이 아닐 날에도 거행 할 수 있도록 “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민의 날 행사는 사전 목포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개최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.” 로 하는 안으로서 문제점이 없어 「원안가결」 하였음.

## 6. 심사결과

【원안가결】